

감리지적사례 FSS/2106-03 : 매출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2017.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2016년까지 4개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2017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회계처리 하였다.

① 종속회사와 과거에 체결한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임의로 100% 증액하여 매출 및 매출채권을 추가로 인식하고, 영업 손실을 영업이익으로 전환, ② 대여금 명목으로 종속회사에 자금을 이체하고, 당일 돌려받는 방법으로 상기 인식한 매출채권을 회수 (매출채권→대여금), ③ 동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 ④ 위 대여금과 동 매도가능증권을 대체처리(대여금→ 매도가능증권)한 후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영업외손실)을 인식하였다.

회사는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매출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로 인해 영업이익이 상쇄되므로 매출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여금, 매도 가능증권으로 대체하여 매출채권과의 연관성을 단절시킨 후 영업외손실인 매도가능증권을 손상처리를 통해 영업이익을 유지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종속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없음에도 계약 금액을 허위로 증액하여 이를 매출로 인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분식회계 처리를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14 및 15에 따르면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야 인식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100% 증액시킨 매출이 수익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종속회사와의 계약금액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이를 100% 증액시키고, 매출채권을 대여금, 매도가능증권으로 전환하는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반복하였음에도 매출 인식 및 각각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수집해야 함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연속 영업손실이 등에 직면한 한계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의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기업의 매출 급증,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의 경우 매우 보수적인 감사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